

<b>제2022-96호</b> <b>2022년 9월 29일(목)</b>	<b>시</b>  <b>보</b> <b>여수시</b>	<b>시 정 지 표</b>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2-400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1
- 여수시 고시 제2022-408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4
- 여수시 고시 제2022-409호 도로구간(중속구간) 설정 고시 5
- 여수시 고시 제2022-41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고시 8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2-2584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신월동 공동주택 진입도로) 9
- 여수시 공고 제2022-2613호 공인 등록 공고 (여수시 공고 제2022-2613호) 10
- 여수시 공고 제2022-2618호 2022년도 여수시 대체인력 8차 모집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11
- 여수시 공고 제2022-2624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 통보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3
- 여수시 공고 제2022-2626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14
- 여수시 공고 제2022-2628호 도로지정 변경 공고(소리면 봉두리 768-1) 15
- 여수시 공고 제2022-2629호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 대상(大賞)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7
- 여수시 공고 제2022-2630호 공인 등록 및 정정 공고 (여수시 공고 제2022 - 2630호) 31
- 여수시 공고 제2022-2633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급신청 사실 통지반 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3
- 여수시 공고 제2022-2636호 '22-23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34
- 여수시 공고 제2022-2637호 '22/'23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 49

회 람								
--------	--	--	--	--	--	--	--	--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 9. 29.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여수시 학동 68-15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광로3-1, 소로1-141)

나. 명 칭: 여수시 학동 68-15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246.31㎡

나. 규 모

구 분	결 정		금회 시행			비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	
광로 3-1	42	2,500	2	80	148.02	
소로 1-141	13	270	3	33	98.29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자 민관식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년월일: 2022.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나. 준공예정년월일: 202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변 이	폭 원 (m)								
기정	광로	3	1	40	주간선 도로	2,500	6호 (학동 295답)	대1-3 (여천동 881-19도)	일반 도로	22호 광장	건고-69호 77.04.18.	
변경	광로	3	1	40~42	주간선 도로	2,500	6호 (학동 295답)	대1-3 (여천동 881-19도)	일반 도로	22호 광장	건고-69호 77.04.18.	일부구간 폭원변경
기정	소로	1	141	10	국지 도로	270	광3-1 학동 68-12대	중2-16 학동 129도	일반 도로		전고-9호 92.01.25.	
변경	소로	1	141	10~13	국지 도로	270	광3-1 학동 68-12대	중2-16 학동 129도	일반 도로		전고-9호 92.01.25.	일부구간 폭원변경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3-1	광로 3-1	일부구간 폭원 변경 - B= 40m → 40~42m (증 2m) 면적 변경 - A= 18,932.09㎡ → 19,080.11㎡ (증 148.02㎡, 0.78%)	여수 학동 68-15번지 일원 주상복합건설에 따른 완화차로 설치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장 (5% 미만의 경미한 변경)
소로 1-141	소로 1-141	일부구간 폭원 변경 - B= 10m → 10~13m (증 3m) 면적 변경 - A= 2,723.56㎡ → 2,821.85㎡ (증 98.29㎡, 3.61%)	여수 학동 68-15번지 일원 주상복합건설에 따른 완화차로 설치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장 (5% 미만의 경미한 변경)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새로 설치되는 도로시설은 관리청인 여수시로 무상귀속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 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광로 3-1	소로 1-141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명칭	성명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광로 3-1	소로 1-141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명칭	성명	주소	
합계		4필지		4,061.1	246.31							
					148.02	98.29						
1	학동	68-15	대	2,197.5	37.07		주식회사 하나자산신 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 란로 127, 15층				
2	학동	68-32	대	782	42.48		주식회사 하나자산신 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 란로 127, 15층				
3	학동	68-13	대	450	36		주식회사 하나자산신 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 란로 127, 15층				
4	학동	68-12	대	631.6	32.47	98.29	주식회사 하나자산신 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 란로 127, 15층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채소류 단지 조성
2. 사업의 내용: 개간 신청지(임야)를 전으로 조성
3. 사업의 구역
  - 위 치: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7번지
  - 지적면적: 26,452m<sup>2</sup>
  - 개간면적: 4,800m<sup>2</sup>
4. 사업비: 63,580,000원
5. 사업예정기간: 2022. 9. 27. ~ 2024. 9. 26.
6. 사업의 효과: 채소 재배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7. 사업시행자: ㄱ주소: 광양시 광포3길 \*  
ㄴ성명: 박\*\*

2022. 9. 28.

여 수 시 장

## 도로구간(종속구간)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28.

여 수 시 장

1. 고 시 일 : 2022년 9월 28일
2. 고시방법 : 시보, 여수시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  
- 울촌산단6로, 성재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조서 및 현황도 2부.

「붙임」

##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조서 및 현황도

관할구역	도로명	도로 유형	구분	도로구간		기초번호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효력발생일	설정 사유
				시작지점	끝 지점	기초번호 시작	기초번호 끝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울촌산단 6로	로	신규	울촌면 여동리 385	울촌면 여동리 386	64-1	64-20	196	9	20	2022.9.28.	1차 종속구간 신규 설정



주소정보관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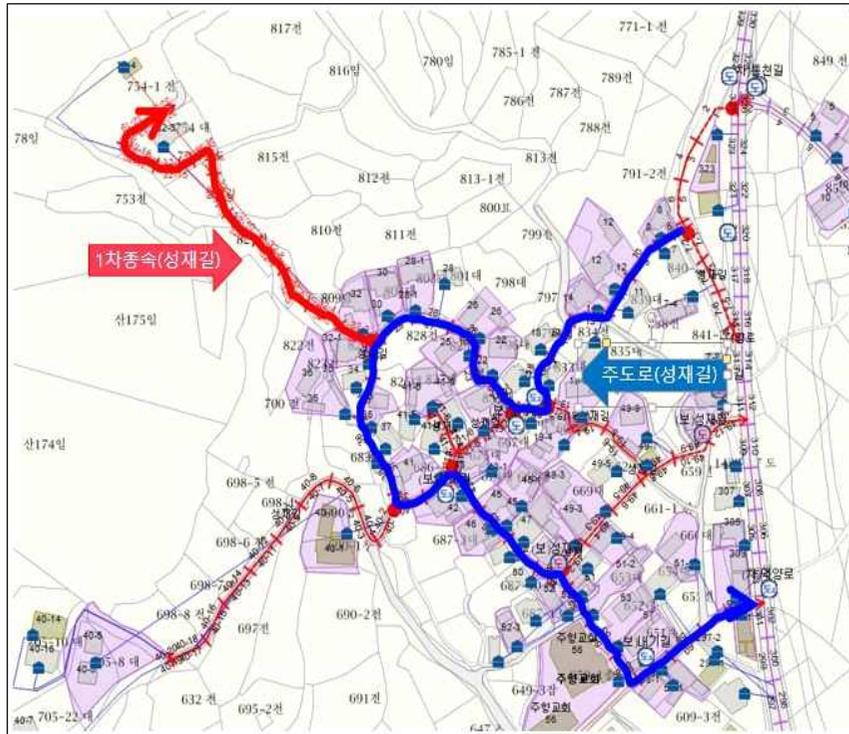


항공영상 사진

「붙임」

##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조서 및 현황도

관할구역	도로명	도로 유형	구분	도로구간		기초번호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효력발생일	설정 사유
				시작지점	끝 지점	기초번호 시작	기초번호 끝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성재길	길	신규	소라면 덕양리 1422-27	소라면 덕양리 754-1	32-1	32-22	213	3	20	2022.9.28.	1차 종속구간 신규 설정



주소정보관리 시스템



항공영상 사진

여수시 고시 제2022 - 410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고시 합니다.

승인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목적	점용·사용 기간	피 승 인 자		변경사항(면적)	
				주 소	성 명	변경전	변경후
2021-12 (*22. 9. 28.)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1106-5번지 일원	소라면 사곡2리 진목마을 선착장	2021. 5. 6. ~ 2051. 5. 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1,246.7㎡	1,639.73㎡ (선착장연장)

2022. 9. 28.

여 수 시 장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준공검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9.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여수시 신월동 1807번지 일원(구 산237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032)사업
  - 나. 명 칭: 여수시 신월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3. 준공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1,454.5㎡
  - 나. 규 모: L=128m, B=1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주)세일산업개발 대표 나연희
  - 나.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78번길 16, 3층(농성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가. 착수년월일: 2019. 3. 21.(실시계획인가고시일)
  - 나. 공사완료일: 2022. 9.23.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 등록 공고

여수시 공인 조례 7조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7.

## 여 수 시 장

1. 등 록 일 : 2022. 6. 29. (수)
2. 등록사유 : 통합인증기 신규제작
3. 등록내역

구분 (관리번호)	공 인 명	등록인영	관리부서 (보고자)	사용일
2200	여수시장인주삼동장전 용(총)		주삼동 (민원지적과 : 최영미)	22. 9. 28.
2201	여수시장인주삼동장전 용(횡)		주삼동 (민원지적과 : 최영미)	22. 9. 28.
2202	주삼동장인민원실전용( 총)		주삼동 (민원지적과 : 최영미)	22. 9. 28.
2203	주삼동장인민원실전용( 횡)		주삼동 (민원지적과 : 최영미)	22. 9. 28.

2022년도 여수시 대체인력 8차 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2022년도 여수시 대체인력 8차 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여 수 시 장

**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 5명**

**[보건 - 2명]**

○ 응시번호 : 1 2

**[시설관리 - 2명]**

○ 응시번호 : 1 2

**[노점·적치물단속 - 1명]**

○ 응시번호 : 1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2** **면접시험 시행계획**

- 일 시 : 2022. 9. 28.(수) 11:00
- 장 소 : 여수시청 결산검사장(2층)
- ※ 면접시험 대상자는 시험 당일 10:50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3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시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중”이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중”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서류전형 심사점수와 면접 심사기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4 최종합격자발표

- 2022. 9. 29.(목) 발표 \*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5 응시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당일 면접시험 개시 1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입실하여 등록하여야 함
- 지정된 시간 내에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총무과(인사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659-3125)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사항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제83조3호의2(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 보완)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대상 업체

상 호 (대표자)	해당업종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주)봉아건설 (박희정)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나주2007-16-01)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제83조제3호의2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 보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2. 공고 기간: 2022. 9. 27. ~ 2022. 10. 11.(14일간)

3. 공고 장소: 여수시 시보 및 홈페이지

## 4. 기 타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http://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직급 상급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7일

여 수 시 장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 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 식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11371	2022-59	패류 양식업 (비탁식)	8.0	화양 안포	2012.10.29. 2022.10.28.	2022.10.29. 2032.10.28.	-	여수시 신월로 561-8, *동 ***호(금호A)	김**외1 (주**)	
11390	2022-60	패류 양식업 (비탁식)	10.0	화정 여자	2012.11.05. 2022.11.04.	2022.11.05. 2032.11.04.	면제	여수시 소리면 사곡리	사곡어촌계	
11391	2022-61	패류 양식업 (비탁식)	8.0	화정 적금	2012.11.06. 2022.11.05.	2022.11.06. 2032.11.05.	면제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적금어촌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2. 09. 28.

여 수 시 장

## 도로 지정 변경 공고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265번지 외 4필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2. 9. 28.

### 여 수 시 장

1. 위 치 : 소라면 봉두리 768-1번지 외1필지 (768-2)
2. 도로면적 : 453m<sup>2</sup>
3. 도로길이 : 75m
4. 도 로 폭 : 6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sup>2</sup> )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274	453	
	소라면 봉두리	768-1	잡종지	975	297	
		768-2	잡종지	299	156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 현황도



## 공 고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 여 수 시 장

###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여수시에 공장 등을 설립·등록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조업의 효율적인 진흥 및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도시성장 도모
- 지역기여 우수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대상(大賞)」 수여 등 인센티브 지원으로 상생발전 도모

####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투자기업에 대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안 제3조 ~ 제7조)

다. 도시동반성장 발전위원회 (안 제8조 ~ 제15조)

라.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안 제16조 ~ 제19조)

마. 일몰조항 (안 부칙 ②)

3. 조례 제정안 : 별첨

4. 입법예고기간 : 2022. 9. 29. ~ 10. 19.(20일 이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 우편, 직접방문은 2022. 10. 18.(화) 도착분에 한함

라.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1청사)

○ 받는 사람 : 여수시장(투자박람회과장)

○ 전 화 : 061)659-3383 팩스 : 061)659-5818

○ 이메일(E-Mail) : [kch4936@korea.kr](mailto:kch4936@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조례 제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에 공장 등을 설립·등록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조업의 효율적인 진흥 및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역기여 권고 사항 마련과 포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시에 공장을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시 소재 투자기업 또는 공장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3. “지역”이란 시 관내로 한정한다.
4. “지역거주”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본인과 가족이 시 소재 주택 등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이란 도시성장을 위해 시와 실천협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에 기여한 우수 투자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 제2장 투자기업 또는 공장에 대한 지역기여 권고

**제3조(지역기여 권고 시책 추진)**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도시동반성장을 위하여 투자기업의 지역기여 권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투자기업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 주사무소 등 설립 유도
2. 투자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시책 발굴
3. 투자기업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지역거주를 위한 관사·숙소·주택 등 지원 사항 마련 및 추진

② 시장은 도시동반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홍보
2.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연구개발, 마케팅, 홍보 및 생산품의 판로 개척 등 지원
3.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신·증설 등을 위한 인허가 원스톱 처리 지원
4.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생산품 지역주민 우선 이용 홍보 등

③ 시장은 도시동반성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동반성장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투자기업의 지역 동반성장 노력)** 시장은 제조업의 균형있는 발전, 도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투자기업이 도시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역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행 노력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임직원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2. 시외(市外) 지역 출·퇴근 버스 운영 중단 등
3.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주민 채용
4. 지역소재 중소기업체 우선 선정 및 일정비율 이상 공사발주
5. 지역 농축수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6. 지역의 문화, 관광, 휴양 등 연수·교육시설 투자
7. 그 밖의 지역기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실천협약 및 이행사항 점검)**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대하여 투자기업과 매년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권위적이고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해서는 아니되며, 상호 평등 원칙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7조(경영권 보호)** 시장은 이행 협약체결 및 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3장 도시동반성장 발전위원회

**제8조(도시동반성장 발전위원회)** ① 시장은 투자기업의 지역기여를 통한 도시동반성장을 위해 도시동반성장 발전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시책 실천기준 및 방법 등 도시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3. 투자기업 임직원의 지역거주 등을 위한 사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 대상(大賞)」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동반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3. 지역기여에 참여한 투자기업의 임·직원
4. 여수 산단 공장장협의회 회장
5.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4.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제16조(포상시기)** 시장은 지역기여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임직원에게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 시기는 매년 말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

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방법 등)** ① 포상은 표창장으로 하며, 표창장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포상금 등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② 투자기업에 대한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최우수상 : 1개 기업 이내, 포상금 5천만 원 이내
2.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우수상 : 2개 기업 이내, 포상금 3천만 원 이내
3.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장려상 : 3개 기업 이내, 포상금 1천만 원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임직원 등에 대한 포상은 기업당 1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 기업 당 6천만 원 이내
2. 이사비용 또는 이주 직원 숙소 임대료 : 기업 당 5천 5백만 원 이내
3.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또는 지역교육비 : 기업 당 1억 원 이내
4. 이주 직원 지역 체육·문화 활동비 또는 교통비 : 기업 당 3천 6백만 원 이내
5.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비 : 기업 당 3천만 원 이내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기여 투자기업 포상관련 평가기준은 별표 1, 2와 같으며, 별표 3의 가점은 기업에 유리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은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시로 전입하여 실거주 중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당되며, 제5호의 지원대상은 시에서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⑥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임·직원 1명당 지급금액은 별표 4과 같다.

⑦ 제3항에 따른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수상 기업 임·직원에게 대한 포상금 지급율은 별표 5와 같다.

⑧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수상에 따른 예우 등)** 표창장을 수여 받은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산단 내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최우수상 수상 기업의 기업명을 법정동명에 추가한 법정동명 변경
  2. 산단 내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최우수상 수상 투자기업의 기업명을 도로명으로 명명 또는 변경
  3.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최우수상 수상 기업명 본청 현관 게시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임직원 초청
  5. 그 밖에 투자기업의 사기진작과 인구증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존속기한)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10년간 효력을 갖는다.

**【별표 1】**

**지역기여 투자기업 포상관련 평가표(제4조, 제17조제2항제4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내용	배점	비고
① 임직원 여수시 거주	○ 임직원 여수시 실거주 비율	30점	※가점표 (별표 4)
	- 100%	30점	
	- 99%	20점	
	- 98%	5점	
	- 97%	3점	
	- 96%	2점	
② 여수시의 지역 출·퇴근 버스 운행	○ 여수시의 지역 출·퇴근 버스 운행	30점	
	- 당초 미운행	30점	
	- 전면 운행 중단(지속)	20점	
	- 일부 운행 중단(50%이상)	10점	
	- 지속 운행	0점	
③ 지역주민 채용	○ 지역주민 채용율	20점	
	- 90%이상 ~	20점	
	- 80%이상 ~ 90%미만	15점	
	- 70%이상 ~ 80%미만	10점	
	- 70%미만	0점	
④ 지역소재 중소기업체 공사 발주율 우선선정 및 공사 발주율(건수)	○ 지역소재 중소기업체 공사 발주율	10점	※가점표 (별표 4)
	- 50%이상 ~	10점	
	- 20%이상 ~ 50%미만	7점	
	- 10%이상 ~ 20%미만	5점	
	- 10%미만	0점	
⑤ 지역 농축수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 지역제품 구매 금액	5점	
	- 3억 원이상 ~	5점	
	- 1억 원이상 ~ 3억 원미만	3점	
	- 5천만 원이상 ~ 1억 원미만	2점	
	- 5천만 원미만	0점	
⑥ 지역의 문화, 관광, 휴양 등 연수·교육시설 투자	○ 지역시설 투자금액	5점	
	- 100억 원이상 ~	5점	
	- 70억 원이상 ~ 100억 원미만	3점	
	- 50억 원이상 ~ 70억 원미만	2점	
	- 50억 원미만	0점	
합 계		100점	

**【별표 2】**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우수기업 포상 기준(제4조, 제17조제2항제4항 관련)**

구 분	포상기준	비 고
최우수상	[별표 1] 지역기여 투자기업 포상 관련 평가표 및 [별표 3] 가점표에 따른 평가점수 95점 이상	
우수상	[별표 1] 지역기여 투자기업 포상 관련 평가표 및 [별표 3] 가점표에 따른 평가점수 85점 이상	
장려상	[별표 1] 지역기여 투자기업 포상 관련 평가표 및 [별표 3] 가점표에 따른 평가점수 75점 이상	

**[별표 3]**

**지역기여 투자기업 포상관련 가점표(제4조, 제17조제2항제4항 관련)**

항 목	평가기준 및 내용	배점	비 고
임직원 여수시 거주	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기업 또는 공장	1점	별표 1의② 항목에 대한 가점
	나. 2인 가구 비율이 높은 기업 또는 공장	3점	
	다. 3인 가구 비율이 높은 기업 또는 공장	5점	
	라. 4인 가구 비율이 높은 기업 또는 공장	10점	
	마. 5인 이상 가구 비율이 높은 기업 또는 공장	15점	
임직원 수에 따른 가점	가. 임직원 수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기업 또는 공장	1점	별표 1의② 항목에 대한 가점
	나. 임직원 수 1,000명 이상 ~ 1,500명 미만 기업 또는 공장	5점	
	다. 임직원 수 1,500명 이상 ~ 2,000명 미만 기업 또는 공장	7점	
	라. 임직원 수 2,000명 이상 기업 또는 공장	10점	
지역소재 중소건설업체 우선선정 및 공사발주율 (금액)	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1점	별표1의④ 항목에 대한 가점
	나.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70억 원미만	3점	
	다. 공사금액 70억 원 이상 ~ 100억 원미만	4점	
	라. 100억 원 이상	5점	

[별표 4]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수상기업 임·직원 1명당 포상금 지급액(제7조제8항제6항 관련)

지급항목	산출내역	1명당 포상금 지급액	비 고
① 이주 정착 장려금 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 이주정착 장려금 - 250,000원*1명*12개월 ○ 주택자금 대출이자 - 250,000원*1명*12개월	3,000천원 이내	
② 이사비용 또는 이주 직원 숙소 임대료	○ 이사비용 - 2,500,000원*1명 ○ 직원 숙소 임대료 - 250,000원*1명*12개월	2,500천원 또는 3,000천원 이내	
③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또는 지역교육비	○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 2,500,000원*1명*2자녀	5,000천원 이내	만19세 이상 자녀
	○ 이주 직원 지역교육비 - 2,500,000원*1명*2자녀		0세~만8세 이하 자녀
④ 이주 직원 지역 체육·문화 활동비 또는 교통비	○ 이주 직원 지역 체육·문화 활동비 - 150,000원*1명*12개월 ○ 이주 직원 교통비 - 150,000원*1명*12개월	1,800천원 이내	
⑤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비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비 - 3,000,000원*1명	3,000천원 이내	

[별표 5]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수상 기업 임·직원 포상금 지급율(제17조제3항제7항 관련)

구 분	포상금 지급율	비 고
최우수상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00%	
우수상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70%	
장려상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50%	

## 공인 등록 공고

여수시 공인 조례 7조에 의거 공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덧붙여 공고 2022-2613호 (2022.09.27.)공인 등록 공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2. 9. 28.

## 여 수 시 장

1. 등 록 일 : 2022. 9. 28. (수)
2. 등록사유 : 통합인증기 신규제작
3. 등록내역

구분 (관리번호)	공 인 명	등록인영	관리부서 (보고자)	사용일
2204	여수시장인돌산읍장전 용(종)		돌산읍 (민원지적과 : 최영미)	22. 9. 28.
2205	여수시장인돌산읍장전 용(횡)		돌산읍 (민원지적과 : 최영미)	22. 9. 28.
2206	돌산읍장인우두출장소 민원사무전용(종)		돌산읍 (민원지적과 : 최영미)	22. 9. 28.
2207	돌산읍장인우두출장소 민원사무전용(횡)		돌산읍 (민원지적과 : 최영미)	22. 9. 28.

#### 4. 변경사항

- 등록일 정정 : 2022. 9. 27.(화) ※당초: 2022. 6. 29.
- 정정사유 : 등록정보 오기재,
- 변경내역

구분 (관리번호)	공 인 명	등록인명	관리부서 (보고자)	사용일
2200	여수시장인주삼동장전 용(총)		주삼동 (민원지적과 : 최영미)	22. 9. 28.
2201	여수시장인주삼동장전 용(횡)		주삼동 (민원지적과 : 최영미)	22. 9. 28.
2202	주삼동장인민원실전용( 종)		주삼동 (민원지적과 : 최영미)	22. 9. 28.
2203	주삼동장인민원실전용( 횡)		주삼동 (민원지적과 : 최영미)	22. 9. 28.

##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9. 28.

## 여 수 시 장

1. 공고내용 :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붙임 참조)
2. 공고대상 : 655명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2. 9. 28. ~ 10. 12.(15일간)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 (T. 061-659-5640~56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공시송달 조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공 고 문

여수시 공고 제 2022-263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8.

## 여 수 시 장

### 1.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제목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툽밥·깎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 기간 : 2022. 10. 1. ~ 2023. 2. 28.
    -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 '22.10.1.~10.30.까지 계도기간(현장지도 중심)을 운영하되,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울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에도 거

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다만,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은 기 시행(9.15.~)
- 문의처 :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45

## 2~8.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

□ 제목 :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가축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인력,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계열화사업자 소속 직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 기간 : 2022. 10. 1. ~ 2023. 2. 28.
  -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 '22.10.1.~10.30.까지 계도기간(현장지도 중심)을 운영하되,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 내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2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초과 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li> <l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 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li> </ul>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p>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li> <li>*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 소독 실시</li> <li>-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li> <li>*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li> <li>-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li> </ul>
3	<p>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재지 : 세종시 부강면,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영주시 장수면 및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p>	<p>○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 외부에 있는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하여야 함</li> <li>*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상차 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li> <li>- 다만, 시·군에서 밀집단지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되어 있고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함</li> <li>* 시·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소독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li> <li>-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단지의 기자재·장비·차량</li> </ul>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단지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4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초과 농장)	<p>○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하여야 함</li> <li>- 다만,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폐사체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며,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는 동 명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li> </ul> <p>*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p>
5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초과 농장) 및 분뇨처리시설	<p>○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 지자체(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li> <li>-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필요</li> </ul> <p>*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p> <p>**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도착지 관할 지자체와 공유</p>
6	종계농장 및 종오리 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초과 농장)	<p>○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li> </ul> <p>*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li> </ul>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p>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p>
7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초과 농장)	<p>○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유선·문자·팩스 등)</li> <li>-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li> <li>-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li> </ul> <p>○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li> <li>- (건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li> <li>-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li> </ul>
8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초과 농장)	<p>○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li> </ul>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문의처 :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45

## 9.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 기간 : 2022. 10. 1. ~ 2023. 2. 28.
  -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 '22.10.1.~10.30.까지 계도기간(현장지도 중심)을 운영하되,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및 육계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문의처 :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45

##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제 2022-8호

명령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명령지역	전국		
명령기간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명령의 이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명령내용	<b>구분</b>	<b>주요 내용</b>	<b>대상</b>
	<b>행정 명령 (10건)</b>	1.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2.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 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진입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3.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4.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5.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6.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7.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8.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9.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10. (既 시행)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법적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를 명합니다

---

다.

2022년 9월 28일

# 여 수 시 장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제목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  
깎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 기간 : 2022. 10. 1. ~ 2023.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22.10.1.~10.30.까지 계도기간(현장지도 중심)을 운영하되,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올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  
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  
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다만,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은 기 시행(9.15.~)

## 2~8.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

□ 제목 :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가축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인력,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계열화 사업자 소속 직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 기간 : 2022. 10. 1. ~ 2023.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22.10.1.~10.30.까지 계도기간(현장지도 중심)을 운영하되,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 내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2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초과 농장)	<p>○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 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li> <li>-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 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li> </ul> <p>*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 소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li> </ul>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p>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p> <p>*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p> <p>-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p>
3	<p>산란계 밀집사육 단지 (소재지 : 세종시 부강면,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영주시 장수면 및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p>	<p>○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p> <p>-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 외부에 있는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하여야 함</p> <p>*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상차 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p> <p>- 다만, 시·군에서 밀집단지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되어 있고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함</p> <p>* 시·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소독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p> <p>-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단지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단지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p>
4	<p>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 (사육시설 50m<sup>2</sup> 초과 농장)</p>	<p>○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p> <p>-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하여야 함</p> <p>- 다만,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폐사체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며,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는 동 명령에 적</p>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p>용을 받지 아니한다.</p> <p>*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p>
5	<p>가금농장 (사육시설 50m<sup>2</sup> 초과 농장) 및 분 뇨처리시설</p>	<p>○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 지자체(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li> <li>-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 필증 발급 필요</li> </ul> <p>*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p> <p>**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도착지 관할 지자체와 공유</p>
6	<p>종계농장 및 종 오리 농장 (사육시설 50m<sup>2</sup> 초과 농장)</p>	<p>○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li> </ul> <p>*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li> </ul>
7	<p>가금농장 (사육시설 50m<sup>2</sup> 초과 농장)</p>	<p>○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유선·문자·팩스 등)</li> </ul>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li> <li>-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li> <li>○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li> <li>-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li> <li>-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li> </ul> </li> </ul>
8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초과 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li> <li>-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li> <li>*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li> </ul>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9.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 기간 : 2022. 10. 1. ~ 2023.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22.10.1.~10.30.까지 계도기간(현장지도 중심)을 운영하되,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및 육계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  
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  
승인서 휴대 의무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022. 10. 1. ~ 2023. 2. 28.)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여 수 시 장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할 것
-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 비·눈이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 생석회 도포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생석회가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의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는 물과 접촉하면 200℃ 이상의 고열을 내므로 화재에 유의해야 함

##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금 사육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가금 사육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 4. 산란계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를 사용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1회용 난좌가 아닌 난좌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금 사육농장에 반입·반출시 각각 세척·소독할 것
- 알의 운반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을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할 것. 새로이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 파레트 등 자재는 가금 사육농장에 반입하기 전에 세척·소독할 것

## 5.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로터리기계 등을 농장 또는 축사 내 진입시킬 경우,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할 것
-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를 소독할 것

-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등)는 농장 간 공용 사용하지 말 것

## 6.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 이상 1,000㎡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이 열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 7.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 8.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 9.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경우,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내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 및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한 후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상차 작업 전·후에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시행기간 : '22. 10. 1. ~ '23. 2. 28.(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 문의처 : 여수시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 ☎061-659-4445

이 공고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